

# 전주한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주한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전주한일고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 활동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4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24.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5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 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6조(기본행동)**

-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품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켜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은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며, 남녀학생의 만남은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⑧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업 태도)**

- ① 학생은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학생은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으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학생은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학생은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생은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⑨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태블릿,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⑩ 학생은 학급의 시설 및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⑪ 학생이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⑫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8조(시설 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 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사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폭력 예방 및 대책)**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본교 ‘학교폭력 예방 치 대책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11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준수한다.
- 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 ⑥ 학생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 등)
- ⑦ 학생은 화투, 카드놀이, 불법도박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 ⑧ 학생은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⑨ 학생은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제12조(용모)

- ①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단정한 머리를 권한다.  
(단, 염색과 탈색의 경우는 규제할 수 있다, 치료 목적의 염색은 허용함)
- ② 학생은 문신이나 피어싱(한쪽에 1~2개만 허용), 지나친 외모 치장(색조화장, 네일아트, 붙임 눈썹, 컬러 렌즈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는 용모를 갖춘다.
- ③ 지나친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모양이 큰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와 모자의 착용)
- ④ 타인을 비하 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은 등·하교 시 교복을 필수로 착용하며, 아침 조회 후 교내에서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고 통이 넓지 않은 검정색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검정색 이외의 바지는 허용하지 않으며, 체육복 정도의 통만 허용함)
- ⑥ 학생은 등교 시 운동화 및 구두를 착용하며, 슬리퍼나 샌들을 신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하되, 실내화를 신고 하교하거나 일과 중에 운동장, 교문 밖 등을 출입할 수 없다.
- ⑧ 학생은 교복을 변형해서 입어서는 안되며, 학교 규정에 맞게 착용한다.
- ⑨ 동복, 하복 착용 기간은 기상조건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학생별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 ⑩ 동절기에는 셔츠와 조끼를 착용한 후 외투 착용이 가능하다.
- ⑪ 체육복은 등교시에는 착용하지 않는다. (단, 정기고사일은 체육복 차림의 등교가 가능하다.)

**제13조(소지 및 사용 금지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가. 소지 금지 물품

- 1) 성냥,ライター,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너클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5)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 제14조(소지 물품 조사)

- ① 제13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 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 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 제15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2’에 따른다.

## 제16조(전자기기 사용)

- ① 학생은 교육활동 과정(조.종례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에서 휴대전화, MP3, 태블릿, 블루투스 이어폰, 게임기 등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원이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수업활동 중 금지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회 주의, 2회 1일 수거, 3회 3일 수거, 4회 7일 수거하여 학교의 지정된 장소(학급 담임, 학년 교무실, 안전생활부실)에 보관할 수 있다.
- ③ 수업활동 중 금지한 전자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 담당 부장교사는 학생, 학부모 면담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생에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상습적으로 사용(5회 이상)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보호자가 담임교사를 통해 해당 학생이 제16조 1항에 해당되는 물품을 휴대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 ⑥ 전학, 휴학, 자퇴, 퇴학 등의 학적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즉시 학생에게 반환한다.
- ⑦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⑧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식1]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⑨ 고사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아침조회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 제17조(정보통신 윤리)

-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18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 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자
- ②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될 물품을 소지한 자
- ③ 학생의 품위에 벗어난 욕설을 한 자
- ④ 교문이 아닌 곳으로 무단 출입한 자
- ⑤ 생활습관 및 예절이 바르지 못한 자
- ⑥ 고의로 학습분위기를 흐리게 한 자
- ⑦ 복장 위반으로 5회 이상 지적을 받은 자

- ⑧ 미인정 지각, 결과, 조퇴, 결석을 통산 3일 이상 한 자
- ⑨ 기타 이상의 각 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제19조(생활지도의 방식)**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 · 제10조에 따른 상담 · 제11조에 따른 주의 · 제12조에 따른 훈육 · 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④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4. 적절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5. 훼손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7. 기타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⑤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제21조(흡연)** 성장 발달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지대한 피해를 끼치는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도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태도와 자아정체성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흡연 학생의 교내·외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와 환경조성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금연의 필요성과 흡연의 폐해를 인지할 수 있는 금연캠페인을 학기 당 1회 실시한다.
- ③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④ 담배, 라이터 등 흡연 도구를 소지한 자와 흡연 동석자는 흡연자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 ⑤ 전자담배 사용 및 소지는 흡연으로 간주한다.
- ⑥ 흡연 적발에 따른 조치는 다음 호와 같다.
  - 1. 1차 적발 시: 담임선생님의 경고
  - 2. 2차 적발 시: 적발 학생 학부모님께 통보(3차, 4차시에도 통보)
  - 3. 3차 적발 시: 부모님 동반 상담 및 금연 교육

- 4. 4차 적발 시: 교내 봉사 2주
- 5. 5차 적발 시: 금연 프로그램 참여

### 제22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3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 ②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2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교감, 안전생활부장, 학년부장, 진로상담부장, 안전생활부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여, 안전생활부장은 간사로서 역할 수행하고 담당교사는 사무를 주관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5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6조(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 봉사: 7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10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5. 퇴학처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행할 수 있다.
    -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학생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 다. 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학생
    - 라.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6.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줌
  -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함
  - 4. 제25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④ 제26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7조(징계의 방법)

- ① 학교 내 봉사: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 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출석정지가 10일 이상일 경우 전학을 권고한다.
- ⑤ 퇴학처분: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으며,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당해 학생,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해야 한다.
- ⑥ 학교 내 봉사부터는 위원회에서 협의 후 안전생활부 업무담당자 또는 안전생활부장이 기안 후 결재를 맡는다.
- ⑦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28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④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 제29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과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 제30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1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제32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33조(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 학교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5장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 제35조(학생생활규정 개정)

-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주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교원협의회의 의결
  - 2. 학부모회의 의결
  - 3. 학생자치회의 의결
  - 4. 제35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학생자치회의 회의
  -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分課) 모임 등의 회의
  - 3. 교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 제36조(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 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⑩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 제37조(학업중단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8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학년 초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학생부장, 전문상담교사,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 ③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1. 숙려기간 및 숙려 횟수(주 단위로 설정)
2. 숙려제 운영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최초 결정에 따르도록 하며, 숙려기간 중 숙려기관, 프로그램 변경 등은 숙려기간 종료 전 학생, 학부모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함(단, 출석을 인정하는 숙려제로 변경 내용은 내부결재를 득함)

### 제39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반드시 대상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하여 안내한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해 사전에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2. 미인정결석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3.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 발견돼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4.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5.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로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법원에서 받은 보호처분이 진행 중인 학생
  5.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6.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수시 합격 또는 수능시험일 이후
  7.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의 산정은 운영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공)휴일, 학교 출석일, 방학, 시험 기간 등은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2.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한다.
  3. 처음: 1주(7일) ~ 최대 2주(14일)까지 부여하고 연장은 최대 7주까지 한다.
  4. 당해 학년도에 해당 학생에 대한 숙려제 운영 횟수는 최대 2회로 한다.
  5. 숙려 조기 종료 및 기간 연장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⑤ 이외에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별표 1】 학교생활교육기준

항	내용	징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4	언행이 불량하여 외부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5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학생	○	○	○		
6	교사에게 언어적인 폭력을 가한 학생			○	○	○
7	교사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한 학생				○	○
8	교사의 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수정의 노력이 없는 학생	○	○	○		
9	교육활동 중 전자기기를 상습적(5회)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학생	○	○			
10	학교에서 제공된 스마트기기를 교육적 목적 이외에 유해사이트 접속(불법 도박), 청소년 유해물(동영상, 저작물) 제작·실행·공유, 기기 관리체계 교란·변경·무력화 행위, 타인 기기 무단 사용·점유·판매 행위, 기타 위법한 행위를 한 학생	○	○	○	○	
11	지속적인 지도(5회)에도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하거나 생활하는 학생	○	○			
12	공중도덕이나 교통 규칙(전동킥보드)을 위반한 학생	○	○			
13	공공(학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 절취한 학생	○	○	○		

항	내용	징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4	인장, 제증명, 공공문서 등을 위·변조하여 사용 또는 대여한 학생		○	○	○	○
15	학교의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6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학생	○	○	○		
17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18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19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20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상습적(3회)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21	유해 매체 및 반입금지물품을 교내로 반입, 유포하거나 사용한 학생	○	○			
22	타인의 금품(귀중품)을 상습적(3회)으로 절취한 학생	○	○	○	○	
23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서 부정한 선거 활동을 한 학생	○	○	○		
24	정당한 이유없이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25	몸에 문신이나 피어싱을 하는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학생	○	○	○		
26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 한 학생			○	○	○
27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 주는 학생	○	○	○		

항	내용	징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28	부정한 휴대물(쪽지) 또는 책상, 벽 등에 사전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는 행위를 하는 학생	○	○	○		
29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 학생	○	○	○		
30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해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는 학생			○	○	○
31	무단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32	무단 외출을 누적 5회 이상 한 학생	○	○			
33	무단 조퇴를 누적 5회 이상 한 학생	○	○			
34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				
35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10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	○			
36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	○	
37	같은 학년 중 미인정 결석 기간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학생					○
38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3회)인 학생	○	○	○	○	
39	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을 사용한 학생			○	○	○
40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	○
41	따돌림, 각종 폭력 등 학교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학생	○	○	○	○	○

항	내용	징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42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키 행위를 한 학생	○	○	○	○	○
43	사이버 상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유언비어 유포, 개인정보 유포, 불법촬영물 교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44	도박을 한 학생(사이버상의 도박 포함)	○				
45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46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47	불건전한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사이트에 접속한 학생	○	○	○	○	○
48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49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50	불량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51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	○
52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임시 취업한 학생	○	○	○	○	
53	학교 폭력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54	재학 중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55	학교생활교육기준 이외의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별표 2】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14조, 제27조 관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2조(훈육)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수업시간에 수업과 무관한 것을 사용하는 물품	수업 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 주의</li> <li>. 2회차 1일 수거</li> <li>. 3회차 3일 수거</li> <li>. 4회차 7일 수거하여 학교 지정 장소 보관</li> </ul>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 빔 기기 등	5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li> <li>·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li> </ul>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li> </ul>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5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li> </ul>

**【별표 3】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제18조 관련)**

<b>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b>	
제12조(훈육)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li> <li>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li> <li>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li> <li>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li> </ol>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특별실 등 교감 지정 장소(수업 종료 시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특별실의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교무실 등(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특별실 등 교감 지정 장소(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각은 수업 시작 후 5분으로 한다.</li> <li>-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등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음)</li> <li>-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li> </ul>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하며,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한다.</li> <li>-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하며,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는다.</li> </ul>				



[서식2] 교무실 및 특별실 분리 지도 대장

< 전주한일고등학교 >				
일자	2023. 11. 1.(수)		확인(서명)	특별실 담당자
	교시	수업담당교사		대상학생 (학번,이름,누적일)
내용	1	장○○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10101 안○○(5/1, 7/5)
특이 사항	1. 10101 장○○.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10101 장○○.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서식3]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전주한일고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 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00-000-0000(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 이용)

2023년 00월 00일

전주한일고등학교장 (직인)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

##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옆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주 한 일 고 등 학 교 장



[서식6] 물품 폐기 확인서

##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 / 반	
물품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p>※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p>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주한일고등학교장 귀하

[서식7]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년    월    일    시		
학번		학생 성명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